브라질연방공화국 국가영화청(ANCINE)과
대한민국 영화진흥위원회(KOFIC)
사이의
영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브라질연방공화국 「Article 5 of the Provisional Measure No. 2228-1/2001」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역할을 수행 중인 국가영화청(Agência Nacional do Cinema, 이하 "ANCINE"라 한다)과 대한민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역할을 수행 중인 영화진흥위원회(Korean Film Council, 이하 "KOFIC"이라 한다)은 (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한다),

- 브라질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오랜 문화적 교류와, 2013년 10월 23일 양 당사자가 체결한 협력약정을 통해 축적된 협력의 성과를 인식하며,
- 영화 예술 및 영화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며,
- 상대국 영화의 상영 활성화 지원이 양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 양국 간 공동제작이 제작자와 창작자의 자유롭고 다양한 영화 창작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하며,
- 양국 영화 전문인 간의 교류와 산업·정책 정보의 공유가 상호 이해와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됨을 인식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양국 영화의 자국 내 극장 및 영화제 상영 활성화를 상호 지원한다.

2. 국제 공동제작을 촉진하고 확대한다.

3. ANCINE와 KOFIC 기관 직원 간 일정 기간 동안의 교류를 장려한다.

4. 영화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

5. 영화 정책 및 양 기관의 활동·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에 따라 협력한다.

제2조 영화 상영 활성화

1. 각 당사자는 자국의 기존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국 내에서 상대국 영화의 상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중 상대국 작품을 소개하기에 적합한 영화제를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영화제 주최 측과 협력하여 상대국 영화 전문인 및 작품의 소개를 촉진한다.

3. 양 당사자는 각국의 기존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영회, 순회 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를 포함하여 양국 영화의 배급 및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 국제 공동제작

1. 양 당사자는 국제 공동제작이 양국 영화산업 간의 창작 협력을 심화하고 작품의 유통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임을 인정하며, 기존 지원제도를 통해 공동제작을 적극 장려한다.

2. 양 당사자는 공식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필요시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3. 양 당사자는 프로듀서 미팅, 개발 랩, 피칭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제작자, 감독 및 영화 산업 관계자 간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한다.

제4조 기관 간 직원 교류

양 당사자는 자발적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양 기관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직원 또는 참관인의 교류를 상호 합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추진한다. 상호주의 원칙은 권장되나 필수는 아니다. 이러한 교류에 수반되는 비용은 파견 기관이 부담한다.

제5조 산업 정보 교류

1. 양 당사자는 자국 영화산업 통계, 영화시장 동향, 관련 법률,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상대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2. 양 당사자는 신흥 기술, 산업 동향 및 지속가능성 관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기관 간 협업 및 공동 사업

1. 양 당사자는 각자의 사업 및 활동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한다.
2. 양 당사자는 필요시 공동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이행 방식

1.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연락을 담당할 대표자를 한 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2. 특정 프로젝트 또는 교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사항은 이행에 앞서 양 당사자 간 사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양 당사자는 필요시 본 양해각서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공동 실무단 또는 임시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유지

이 양해각서의 이행 과정에서 상대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 및 자료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재원 및 자원

1. 본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은 각 당사자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2.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을 계획하면서, 공공 또는 민간 파트너, 국제기구 등 제3자와의 실무적·재정적 협업을 모색할 수 있다.

제10조 개정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2조 최종 조항

1.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종료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 통보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본 양해각서는 포르투갈어,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세 언어 본은 동일하게 정본의 효력을 가진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2026. 7. 27

브라질 국가영화청 (ANCINE)

성명 :

직위 :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성명 : 한상준

직위 : 위원장